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0나208813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0나20881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철원군법원 2020. 6. 4 선고 2019가소28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재

변론종결 2021. 12. 14.

판결선고 2022. 2. 8.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2020. 6. 4. 선고 2019가소28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 11,612,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 이후 지연손해금.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포천시청이 발주한 국지도 C 보도설치 공사를 원고가 도급받아 주식회사 D에게 하도급 주었고, 주식회사 D은 제1심 공동피고 E에게 다시 하도급 주었다. E은 2018. 4.부터 8. 무렵까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로부터 골재를 납품받았다. E은 실제 납품량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그 요청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행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실제 납품량에 따른 금액보다 11,612,000원을 더 받아갔다.

2. 판단

피고가 제출한 을가1,2,3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의 납품량과 E에게 반환한 금액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갑1,2,3,4,5 등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다거나 E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이 다른 제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인다.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황현찬, 판사 이효두